

선거 시행 세칙

제정 1993. 3. 10. 개정 1998. 7. 24.
개정 2001. 3. 10. 개정 2001. 9. 1.
전문개정 2013. 3. 1. 개정 2013. 11. 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선거시행세칙은 대경대학교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방법)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제 2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3조(선거권) 본교 재학생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 대하여 부여한다.

제4조(피선거권) 피선거권자의 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2학기이상 등록을 하고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직전(前)학기까지의 전(全)성적이 과목낙제 없이 평균 B(3.0)학점 이상인 자
3.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해당학기 출석상황이 90%이상인 자
5.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 전까지 교내의 학과, 써클 및 학생회 간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6. 재학기간 중 1회 이상 입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3·4년제는 1학년만 입후보 가능)
7. 재입학 및 타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없는 자
8. 범죄경력 사실이 없는 자 <신설 2013.11.15.>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구성)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라 한다) 는 총학생회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능) 선관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시 결정공고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일체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일체
4.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사무일체
5. 당선자 선포 및 공고
6.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일체

제7조(의결) 선관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선거인 명부) ①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 현재의 재학생을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②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권자의 학과, 학년, 학번, 성명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9조(피선거권 및 선거권의 제한) ① 선관위 위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② 선거일 현재 근신이상의 징계를 받고 있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 4 장 입후보자 등록

제10조(입후보자 등록) 학생회 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소정양식)
2. 학과장 추천서 1부 (소정양식)
3. 출석확인서 1부 (소정양식)
4. 선거권 자 50인 추천서 (소정양식) 단, 연립후보는 동일인으로 인정.
5. 서약서 1부 (소정양식)
6. 선거참관인 추천서 1부 (소정양식)
7. 홍보물 제작 신청서 1부 (소정양식)
8. 입후보자 선거사무장 및 운동원 신고서 1부 (소정양식)
9. 후보자 소견발표문 1부 (A4용지 2매)
10. 학생간부는 사퇴서 1부 (소정양식)
11. 명함판 사진(칼라) 4매
12. 전(全) 학년 성적증명서 1부 (수강신청 확인용)
13. 범죄경력 확인서 1부 <신설 2013.11.15.>
1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신설 2013.11.15.>

제11조(입후보자 등록)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마감일 17시까지 전 제10조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관위에 등록하고 등록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선관위는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여 등록마감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직접 서명으로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관

위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④ 1인의 선거권자가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였을 경우 그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 5 장 선거운동

제12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입후보자 등록일부터 투표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 위원 및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학생간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3조(유세) 유세는 방송유세 및 합동유세로 하며, 그 시기는 선거운동기간에 한다.

제14조(유세방법) ① 입후보자 유세의 시간 및 장소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② 유세는 2회로 정하고 유세순서는 방송 및 연설회 유세시작 10분전에 추첨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③ 유세시작 10분전까지 입후보자가 미도착 하였을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선거 관리) ① 선거용 벽보의 매수와 크기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② 선관위는 합동으로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선거공약 등을 기재하여 선거벽보를 게시한다.

③ 선거용 현수막은 2매로 한정한다.

제16조(금지사항) 다음 각 호와 같은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선관위에서 경고 또는 입후보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보도 및 방송,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확성기, 녹음기, 불법현수막 등)의 사용

2. 선관위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유인물 배포, 선거 게시물 등의 부착행위

3. 선거를 위한 집회 및 시위행위

4. 선관위 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언,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제17조(벌칙) ① 제16조의 각 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의결을 거쳐 2회 이상 경고 시 등록을 취소하고 입후보를 무효화 한다.(구두경고 3회 = 경고 1회)

② 경고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하며 교내·외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 6 장 투 표

제18조(투표방법)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한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하여야 한다.

제19조(투표권자의 증명) 투표권자의 증명은 본 대학의 학생증 및 기타 신분증으로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제20조(투표권자 준수사항) 투표권자는 반드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 후 기표용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여야 한다.

제21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상오 10시부터 하오 6시까지로 하며,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장밖에 줄을 선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있다.

제22조(투표장소) 투표장소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23조(투표소 관리) 투표소 내에 선관위, 참관인, 투표자, 선관위에서 승인한 자 이외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제24조(투표참관) ① 참관인은 투표용지의 교부사항과 투표사항을 참관할 수 있다.

② 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권유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구두경고 2회 퇴장)

제25조(투표함) ① 투표함은 선관위에서 제작하여 관리한다.

② 투표 개시 직전 선관위 위원과 참관인은 투표함을 확인한 후 시건 장치를 하고 봉인한 다음 열쇠는 선관위 위원장이 보관한다.

제26조(투표함 송부)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은 봉인하여 개표장소로 선관위 위원과 참관인의 입회 하에 송부한다.

제27조(투표관계 서류의 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는 선관위 위원장에 의해 투표일로부터 6개월간 학교에 보관한다.

제 7 장 개 표

제28조(개표) 개표에 관한 사무는 선관위에서 행한다.

제29조(개표소의 출입제한) 개표소에는 선관위 위원, 참관인, 선관위에서 승인한 자 이외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제30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투표용지에 필요한 ○표 이외의 표시가 있는 것.
3. ○표가 1/3이상 벗어난 것.
4. 기표 란에 ○표하지 아니한 것.
5. 한 개의 투표용지에 두개이상의 표시가 있는 것.
6. 한 기표 란에 3회 이상 ○표가 있는 것.
7. 훼손된 투표용지

8. 지정된 기표용 도구이외의 표시는 무효 처리됨.

제 8 장 당선선포

제31조(당선자 결정) ① 당선자는 최다 득표자로 하고 총장의 인준을 받아 이를 결정한다.

②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로만 재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32조(당선자 공고) 선관위 위원장은 당선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당선자에게는 당선통지를 한다.

제33조(당선자 임기) 당선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학생회 회계년도와 같다.

제34조(단독입후보자) 입후보자가 1인 인 경우에는 총유권자의 과반 수 이상 투표로 총 투표자의 1/2 이상 득표해야 한다.

제 9 장 선거무효 및 재선거

제35조(선거무효) 선거에 부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선거무효 소송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에서 이에 대한 본 선거규정의 위반여부를 심의하여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즉시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하여 결정한다.

제36조(재선거) 선거무효 결정이 되었을 때 또는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선관위 위원장이 3일 이내에 재선거를 공고하며,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37조(당선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선관위에서 당선무효를 결정하고 차점자가 이를 승계한다.

1. 추천서를 부정하게 작성한 자.
2. 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금품수수,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3. 고의로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자.
4. 선거를 위한 집회 및 시위행위를 한 자.
5.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6. 당선자 선포 후 부정선거에 관한 사항이 나타났을 때.
7.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고를 당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8.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 및 선거권이 정지되었거나 상실하였을 때.
9. 런닝메이트제는 회장사퇴 시 부 학생회장은 동일인으로 인정 처리된다.

제38조(선거 후보자 등록 및 선거) 재선거에 따른 후보자 등록 및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39조(보궐선거) 학생회 정·부회장의 유고 시 또는 불신임 결의에 의해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학회장 중에서 선관위 위원장을 선출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집행한다.

제40조(세부사항)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에 관한 통상관례 및 선관위에서 결정하고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간접선거) 해당년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차년도 학회장 중에서 간접선거를 실시하여 학생회장을 선출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